

부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320091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변론 종결2018. 4. 5.

판결 선고2018. 5.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4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6%, 2017. 5. 26.부터 2017. 7. 24.까지는 연 9%, 2017. 7. 25.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17. 2.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38,843,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6%, 2017. 5. 26.부터 2017. 7. 24.까지는 연 9%, 2017. 7.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8,843,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6%, 2017. 5. 26.부터 2017. 7. 24.까지는 연 9%, 2017. 7.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위 원리금합계액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함)는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이하 '경남에너지'라고 함)와 사이의 도시가스공급계약에 따른 가스사용료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4. 7.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보험금액 : 4,000만원, ■ 피보험자 : 경남에너지,

■ 보험기간 : 2015. 3. 2. ~ 2017. 3. 1.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A가 경남에너지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함)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2%)을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다. 피고 A가 경남에너지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2017. 3. 1.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경남에너지가 2017. 4. 5.경 원고에게 도시가스 요금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다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7. 4. 25. 경남에너지에 38,843,3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공장용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은 원래 피고 A 소유였는데, 피고 회사들 사이 2017. 2. 14. 피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C'이라 함)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부동산 내 별지 기계 및 설비를 38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함).

마.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표 순위번호 ①~③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7. 2. 28. 피고 C은 표 순위번호 ④⑤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경남은행으로부터 38억원을 대출받아 2017. 2. 14. 기준 위 ①~③ 대출원리금 잔액 4,846,638,696원 중 38억원을 변제하여 2017. 3. 2. 위 ①~③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①	2014/5/30	2,304,000,000	A	경남은행	1,920,000,000
②	2014/7/23	1,140,000,000	A	경남은행	950,000,000
③	2014/12/11	1,824,000,000	A	경남은행	1,520,000,000
①~③ 합계	4,390,000,000				
④	2017/2/28	3,283,200,000	C	경남은행	2,736,000,000
⑤	2017/2/28	1,276,800,000	C	경남은행	1,064,000,000
④~⑤ 합계	3,8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8,84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6%, 2017. 5. 26.부터 2017. 7. 24.까지는 연 9%,

2017. 7. 25.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보험사고 직전이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피고 A의 위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앞서 본 표 ①~③과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2. 28. 피고 C이 표 ④⑤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38억원을 대출받아 위 ①~③의 피담보채무액 38억원을 상환하고 ①~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그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감정가 4,144,729,000원에서 위 ①~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8억원을 공제한 344,729,000원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거나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표 ①~③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5,268,000,000원이고, 2017. 2. 14. 기준 ①~③ 대출원리금은 4,846,638,696원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기계 및 설비의 시가 내지 감정가는 4,144,729,000원 상당으로 위 ①항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③ 경남은행은 임의경매로 자신의 위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낙찰가가 현저히 낮은 관계로 은행 측의 손해를 최소화(경남은행은 38억원 외 표 ①~③에 기한 잔존 미변제 대출금 10억원 상당은 전액 대손상각 처리하였다고 한다)하기 위하여 피고 C의 대표자 E에게 권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기계 및 설비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현 시세는 위 ②항의 금액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문흥만

별지